

CEO Report

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

2017. 2

김해식

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
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.

CONTENTS

I. 서론	1
II. 서로 다른 평가기준	2
1. 두 차례의 회계제도 개혁	2
2. 자산과 부채의 회계 불일치	3
III. 평가기준 일치와 저금리	4
1. 두 가지 도전과제	4
2. 저금리와 IFRS 17 최초 시행	5
3. 新지급여력제도와 요구자본	6
IV. 보험산업의 대응	7
1. 자본확충, 이익창출능력 제고	7
2. 감독 로드맵, IFRS와 일정 분리	8
3. RBC비율, 위험경감 인정	9

I

서론

- ▣ 보험부채의 평가기준을 담은 최종기준서(IFRS 17) 발표가 올해 상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움직임도 활발함.
 - 최근 보험산업 내에는 IFRS 적용지원 T/F가 꾸러졌으며,
 - 금융당국은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 중

- ▣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시행될 경우 보험산업은 자본확충 및 위험관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도전과제에 직면할 수 있음.
 - 금융당국은 RBC 요구자본 산출방식과 시가기준 준비금의 적립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하여 보험회사에는 자본확충이 중대 현안으로 부상
 - 그러나 자본확충의 주된 수단인 채권의 평가이익은 향후 시장 환경을 볼 때 상당한 제약이 예상되고, 보험회사가 위험관리수단을 활용해도 RBC 요구자본이 줄어들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

- ▣ 이에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보험부채의 시가회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보험회계제도가 변화해 온 궤적을 따라 살펴보고자 함.
 - 보험산업 공통의 현안이나 자료의 한계로 분석은 생명보험 위주로 제시

II

서로 다른 평가기준

1. 두 차례의 회계제도 개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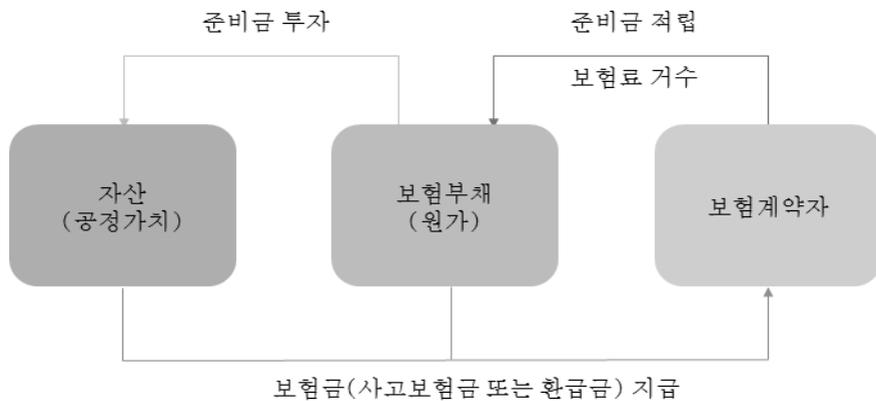
- ▣ 1980년대 후반 미국 금융위기*를 계기로 1990년대 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회계기준이 등장하여 세계 전역으로 확산
 - **(Cherry-picking)** 당시 금융회사들은 자산의 시장가치가 원가를 초과하는 자산은 처분하고 원가를 밑도는 자산은 그대로 두어 이익을 부풀리고 부실한 자산을 감추는 분식회계로 회계개혁을 촉발
 - **(부채는 원가)** 위기 이후 자산의 평가가 원가에서 공정가치, 즉 시가로 바뀌었으나, 부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음.
 - * 저축대부조합 위기를 계기로 시가회계, 예금자보호제도, 위험기준 자본규제 등 현행 감독체계의 골격이 마련됨.
- ▣ 유럽연합 출범을 계기로 1997년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논의를 다시 시작
 - **(IFRS 4)** 1단계로 2004년 최초의 국제회계기준(IFRS 4)이 마련되고, 시가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2단계 작업이 진행 중임.
 - 그동안 보험회계는 각국 고유의 영역이어서 국제기준 부재
 - IFRS 4는 원가 기준의 기존 회계관행을 허용(한국은 2011년 채택)
 - **(IFRS 17)** 2단계 기준인 IFRS 17이 2017년 확정되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IFRS 4를 대체하게 됨.

2. 자산과 부채의 회계 불일치

☑ 지난 20년은 자산은 시가, 부채는 원가로 표시한 회계 불일치의 시대

- **(자본 왜곡)** 자산은 시가로 표시되지만 부채가 원가로 표시되면 장부상 자본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

▣그림 II-1 보험회사의 현금흐름과 자산 및 부채의 표시



☑ 보험산업은 원가 조정 및 위험준비금 적립으로 자본 왜곡을 보정해 옴.

- **(준비금 재평가)** 일반회계는 부채의 과소 적립 여부를 평가하여 원가를 조정*하여 자본이 실제보다 많게 평가되는 왜곡 문제에 대응
 - *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보험료결손제도(PDT: Premium Deficiency Test)
 - * IFRS 4의 부채적정성평가제도(LAT: Liability Adequacy Test)
- **(위험준비금 적립)** 지급능력감독에서는 보험부채의 원가 조정 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자산 손실에 대비한 위험준비금을 추가로 요구
 - 자산 처분 이익 등을 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내부유보를 강제함.
 - 미국, 일본 등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음.

III

평가기준 일치와 저금리

1. 두 가지 도전과제

- ▣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자본 왜곡을 초래하는 자산과 부채의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함께 만드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음.
 - **(평가기준 일치)** 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하면 현행 일반회계의 원가 조정이나 감독회계의 별도 위험준비금은 필요하지 않게 됨.

- ▣ IFRS 17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는 두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
 - **(IFRS 17 최초 시행)**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계약의 준비금이 IFRS 17이 적용된 평가액보다 작을 경우 보험회사는 준비금 부족만큼 보유자본이 줄어들 수 있음.
 - **(IFRS 17 시행 이후)** 최초 시행에 따른 자본 감소가 없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만기 차이는 여전히 보험회사의 자본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.

- ▣ 보험회사의 두 가지 과제는 모두 지속적인 금리 하락에서 비롯되는 문제
 - **(낮은 할인율)** 최초 시가평가 시 준비금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준비금 적립액과 평가액 차이가 커짐에 따라 준비금 부족액 증가
 - **(금리위험)** 금리 하락 시 만기가 긴 부채의 증가가 자산 증가보다 커서 만기 불일치가 클수록 요구자본을 늘리는 자본규제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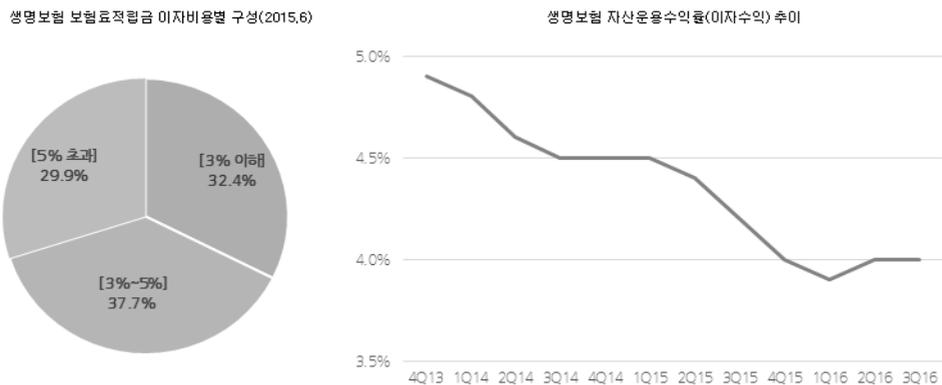
2. 저금리와 IFRS 17 최초 시행

☑ 저금리 추세에 따라 자산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자수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치는 보험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.

- **(이자역마진)** 5%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보험료적립금이 전체의 30%에 달하는 반면, 이자수익률은 최근 4% 수준에 불과
- **(준비금 부족)** 이차역마진 지속으로 장래손실이 예상되는 보험계약의 준비금 부족 규모는 총자산의 3~6% 수준으로 추정*

* 조재린 · 황인창 · 이경아(2016); 한국은행(2016. 12), 「금융안정보고서」

■그림 III-1 생명보험 이자비용과 이자수익



자료: 한국은행(2016. 12), 「금융안정보고서」;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.

☑ 한편, IFRS 17 최초 시행 시 '장래이익 인식'을 허용하는 안이 검토 중

- **(장래이익의 즉시 인식)** 최초 시행 시점에서 준비금의 장래이익을 장래손실과 상계할 경우 준비금 부족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.
- **(장래 손익계산서)** 다만, 장래이익의 즉시 인식은 이익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므로 IFRS 17 시행 이후 이익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음.

3. 新지급여력제도와 요구자본

- ▣ 보험회사는 준비금 외에 여유자금이 있어야 지급여력이 있다고 평가
 - **(준비금)** 보험회사는 같은 위험을 인수한 위험공동체(계약군)에서 예상되는 손실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로 준비금을 적립
 - **(위험자본)**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(위험)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비금 외에 여유자금, 즉 위험(요구)자본이 필요
 - 지급여력평가: 가용자본 \geq 요구자본; 가용자본/요구자본 \geq 100%
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 150% 유지 권고

- ▣ 금융당국은 RBC 요구자본 측정을 강화하고 IFRS 17 시가기준 준비금의 부족 문제도 IFRS 17 시행 이전에 해소한다는 로드맵을 제시
 - **(요구자본 강화)** 최근 금융당국은 ‘신지급여력제도 로드맵’을 추진
 - 2017년 금리연동형 계약과 변액보험의 금리위험 산출기준 강화
 - **(준비금 강화)** 금융당국은 자산과 부채 시가평가 공개협의를 제시
 -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LAT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
 - 시가평가에 따른 준비금 부족분을 IFRS 17 시행 이전까지 해소

- ▣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자본확충 요구와 더불어 배당 억제를 추진 중
 - **(이익 내부유보)** 위험준비금과 같은 완충수단이 없는 금융당국은 준비금 재평가(LAT) 강화와 함께 이익잉여금의 배당 억제를 추진
 - **(저금리기 자본확충)** 그동안 보험회사는 증자 외에도 낮은 비용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채권평가 이익의 증가로 자본을 확충함.

I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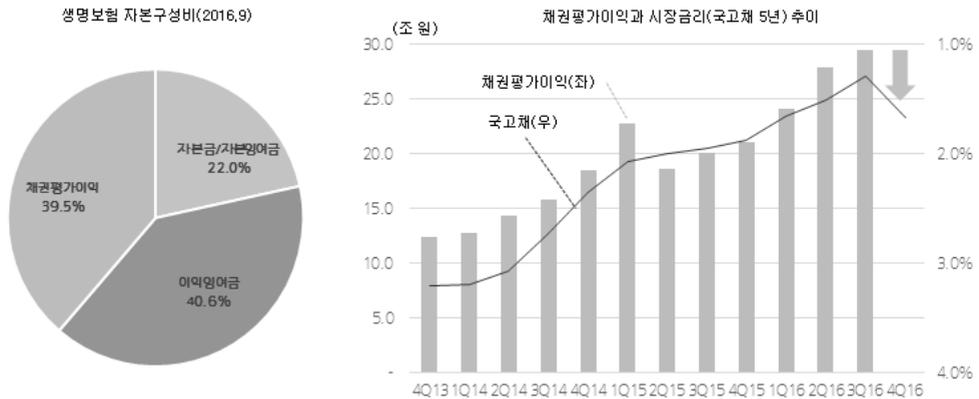
보험산업의 대응

1. 자본확충, 이익창출능력 제고

▣ 자본확충수단에 제약이 커지는 만큼 보험회사는 이익을 보수적으로 관리

- (금리 상승)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으로 채권발행 비용도 상승하고 채권평가 이익이 감소하여 보험회사 자본확충에 제약이 커짐.
 -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한 이익잉여금을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

◻그림 IV-1 생명보험 자본 구성 및 채권평가이익 추이



주: 2016년 4분기(4Q) 채권평가이익 자료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화살표로 증감 방향만을 표기.
 자료: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.

▣ 저성장 시대에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에 집중할 필요

- (수익 중시) 보험회사는 가격자율화와 IFRS 17 시행을 저성장 사업모형 구축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.

2. 감독 로드맵, IFRS와 일정 분리

☑ 최근 금융당국은 IFRS 17에 대비한 준비금 감독방향*을 제시

- **(LAT 할인율 인하)** LAT 할인율을 2016년 대비 향후 3년간 81% 수준까지 인하하는 준비금 증액방안이 제시됨.
 - IFRS 17 최초 시행 시 장래이익을 즉시 이익으로 인식하더라도 장래 손실이 보전되지 못하는 준비금 부족 상황에 대비하려는 목적
 - **(한시적인 RBC 완화 병행)** 준비금 증액분의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RBC비율 급락을 완화하는 “한시적인” 조치 병행
 - ‘IFRS 17 시행 전 준비금 부족 해소’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가용자본 인정 조치는 시행 전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됨.
 - 그런데 신지급여력제도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IFRS 17 시행 이후의 RBC비율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
- * 금융당국은 업무설명회(2017. 2. 21)를 통해 2017 감독방향 제시

☑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과 보험산업의 자본확충 여건을 고려하여 건전성 감독 로드맵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

- **(가용자본 인정 시한)** 준비금 증액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충분하게 설정하여 로드맵을 추진할 필요
 -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원가 기준 준비금을 시가로 적립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유럽연합의 감독(EU Solvency II) 사례도 있음.
- **(예측가능한 규제)** 대규모 자본확충 이슈가 시장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로드맵을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시장 안정과 자본규제 효과를 높일 것임.

3. RBC비율, 위험경감 인정

☑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위험관리수단 활용을 유도할 필요

- **(위험관리 유인 증대)** 준비금 시가평가에 따라 자본 변동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보험회사가 위험관리수단을 활용할 유인은 늘어날 것이며, 다양한 위험 관리수단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음.
 - 보험회사가 손실계약 등을 보험시장(재보험)과 금융시장(파생상품)으로 이동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임.
- **(경감수단 활용 제약)** 그러나 위험관리수단 활용이 RBC 요구자본 경감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아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이들 수단을 활용할 유인이 높지 않은 실정임.
 - 재보험이나 파생상품 활용이 미미한 데에는 거래비용도 발생하지만 그 위험경감효과가 지급여력평가에서 RBC 요구자본 경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음.

저자약력

■ 김해식

St. Johns University 위험관리석사
보험연구원 연구위원
(E-mail : haeskim@kiri.or.kr)

CEO Report 2017-01

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

발행일	2017년 2월
발행인	한기정
발행처	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
인쇄소	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- 2999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
(☎3775-9041)로 연락하여 주십시오.

